

「초격차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공고

신산업 분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통한 초격차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추진개요

- ☐ **사업목적** : 신산업 분야에서 대·중견기업·공공기관 등과 협력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원활한 성장을 지원
- ☐ **지원대상** : ¹⁾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며, ²⁾대·중견기업 및 공공
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³⁾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에 해당 될 경우 업력 10년 이내(p.9 참고)
(미해당시 업력 7년 이내)
- ☐ **선정규모** : 5개사 내외
- ☐ **사업내용** :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신청과제** : 창업기업 1개당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2

지원내용

① 자금지원 : 수요처와의 협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5천만원 이내)

* 협업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사용 분야는 창업기업이 자유롭게 구성 가능

< 개발비용 사용 가능한 항목 >

구분	집행 내용
1	기술검증 ■ 기술검증 및 실증에 필요한 제반 비용
2	시험·인증비 ■ 시험분석 및 제품·시험·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3	신뢰성 평가비 ■ 신뢰성 기술 및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4	시제품 제작비 ■ 설계, 디자인, 시험설비 제작경비(외부업체 의뢰제작 포함)

② 연계지원 : 선정기업이 「'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지원 시 ①민간추천 자격 부여 또는 ②가점 제공(비중 추후 검토)

* 민간추천 자격 : 대기업이 초격차 프로젝트에 협업 스타트업을 추천하는 방식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개요 >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초격차 10개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 <10대 분야> ① 시스템반도체 ② 바이오·헬스 ③ 미래 모빌리티 ④ 친환경·에너지 ⑤ 로봇 ⑥ 빅데이터·AI ⑦ 사이버보안·네트워크 ⑧ 우주항공·해양 ⑨ 차세대원전 ⑩ 양자기술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 최대 6억원(연간 최대 2억원 x 3년) * 대응자금(현금 또는 현물) 30% 기업부담	
	연계 지원	R&D	■ 최대 5억원 (연간 최대 2.5억원 x 2년) * 대응자금(현금 또는 현물) 20% 기업부담
		정책자금, 기술 보증, 수출바우처	■ 신청 시 심사 간소화 및 우대조건 등 적용
	프로그램 지원	■ 기술사업화, 글로벌 협업, 투자유치 주관기관을 통해 기술 고도화, 대·중견기업 협업, 국내·외 투자유치 등 지원	

3

선정평가

□ **평가방법** : (1단계) 서류평가 → (2단계) 발표평가

- (1단계) 오픈이노베이션 전문가 등 외부평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통해 창업기업 참여신청서에 대한 서류평가 진행

* 1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규모의 3배수 선정(15개 내외) → 2단계 평가 진행

- (2단계) 발표평가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력,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로의 선정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

* 기업별 30분 내외(발표 20분, Q&A 10분, 대표자 직접 발표) / 발표 시간·장소 추후 안내

□ **평가항목** : 협업 수준·성과, 초격차 프로젝트로의 연계 가능성 등

1단계 (서류)	▪ 수요처와의 협업 성과 및 계획의 우수성, 팀구성 등 협업역량의 우수성 등 평가
2단계 (발표)	▪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 우위성,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로의 연계 가능성 등 평가

□ **평가일정** : '23년 10월 3주차 ~ 11월 2주차

< 평가일정(안) >

①요건검토 업력, 제출서류 등 ~'23년 10월 3주	▶	②1단계 평가진행 참가신청서 서류평가 '23년 10월 3주	▶	③결과안내(1단계) 2단계 평가대상 기업 '23년 10월 3주
▼				
⑥결과안내 및 시상식 개최 총 5개사 '23년 11월 말	◀	⑤사업운영위원회 최종 선정기업 심의 '23년 11월 2주	◀	④2단계 평가진행 발표평가 '23년 11월 1주

4

신청·접수방법

□ **신청기간** : '23년 9월 20일(수) ~ 10월 13일(금) 16시까지

* 온라인 신청(www.k-startup.go.kr)

□ 신청자격

◆ ①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후 10년 이내)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에 해당될 경우 업력 10년 이내(p.9 참고)
(미해당시 업력 7년 이내)

② 공고일 현재 대·중견기업·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진행중인 창업기업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해당 시**) 2013년 9월 20일 ~ 2023년 9월 20일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미해당 시**) 2016년 9월 20일 ~ 2023년 9월 20일

* (참고 2)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사업자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공동·각자대표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제출서류 * 업로드 파일은 30MB 이하

구분	제출서류
모집공고 신청 시	■ (필수)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협업 증빙서류(수요처 협업 확인서 또는 MOU 등) → [붙임 2~3] 참고
서류평가 통과 시	■ (필수) 발표자료(PPT)

* 참가신청서 양식은 제공되는 한글파일 외 MS WORD, PPT 등 자율양식으로 제출해도
무관 (단, 참여신청서 지정된 작성 항목은 필수 작성)

□ 신청 제외 대상

No.	지원 제외 기준
1	■ '22년 혁신분야창업패키지(BIG3) 및 '23년 초격차 스타트업 선정기업
2	■ '22년 대스타해결사 플랫폼 및 '23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선정기업
3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4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기업)
5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6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7	■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자 (기업) (참고1 참조)
8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 신청문의

○ 챌린지 문의 :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실 (044-410-1690)

○ 온라인 신청(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신청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K-startup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 K-startup 홈페이지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하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 "제출 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하며, K-startup 홈페이지는 Windows(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웨일) 또는 MAC OS(사파리, 크롬)로 접속 가능, MAC OS에 Windows를 설치하여 접속할 경우 불가
- ② 과제정보 입력 및 참가신청서 업로드까지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에 대한 접수가 완료됨
- ③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가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으며, 선정자는 동 공고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본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담기관(창업진흥원)·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④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⑤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 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⑥ 챌린지를 통해 지원받는 비용은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의 사업비와 중복지출이 불가 하며, 중복지출 내역이 발견될 경우 비용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유의 사항

- ① 발표평가 시 신청기업 대표(본인)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본인의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신청기업이 제출한 참가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시 현장평가가 추가될 수 있음)
- ②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함

참고 1**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2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개정 전	개정 후 ('22.6.29.)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참고 4**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지능형 로봇
⑧	스마트제조
⑨	시스템반도체
⑩	자율주행차
⑪	전기수소차
⑫	바이오
⑬	의료기기
⑭	기능성 식품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⑯	미래형 선박
⑰	재난/안전
⑱	스마트시티
⑲	스마트홈
⑳	신재생에너지
㉑	이차전지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